경 고 장

1. 인적사항

성 명	나이 • 성별	주소	연락처	비고

2. 경고사유:

3.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반복 · 지속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때는 스토킹범죄로 엄붕히 처벌되며, 타인의 생명 · 신체에 대한 위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점을 알려드리니, 향후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법 률	행 위			형 량
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	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주거, 직장,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		반	3년 이하 징역 3천1원 이하 벌금
	우편·전화·팩스·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 (이하 물건 등)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			흉기휴대시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
	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			
	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			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	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	사람의 살해		시형 무기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
	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 등 수사단소의 제공, 진술, 증언 또는	사람의 신체를 상해/폭행/		1년 아상의 유가정역
	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	사람의 신체를 상해/폭행/ㅊ포감금한 결과 사람 사망	해/폭행/ㅊ포감금한 결과 사람이	
	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시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	있는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	
청 버 이 법	사람을 살해(제250조 제1항)			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	사람의 신체를 상해(제257조 제1항)		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	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(제260조 제1항)			2년야 의명도는 500만원 야 의 범금
	사람을 체포、감금(제276조 기		5년야미정맥 <u>는</u> 7000원야미범	
	사람을 협박(제283조 제1항)		3년야 미정 또는 500년 야 미 발금	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	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모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(제144조	眇	년야미정무는 1천원야미범	
기타				